

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교육실 운영 지침

제정 2008. 06. 10.

개정 2013. 03. 21.

개정 2017. 11. 01.

개정 2022. 12. 29.

개정 2023. 07. 01.

개정 2024. 11. 08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한의학교육실(이하 “교육실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교육실은 한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교육매체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
2. 교육 정보의 제공
3.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
4. 한의학과 교육과정 및 통합강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한의학교육에 관한 사항

제3조(실장) ① 교육실에 실장 1인을 두며, 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실장은 교육실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교육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의학교육실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실장, 교학부원장, 한의학과장, 학사과정주임교수, 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실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과정평가 전문위원을 간사로 한다.

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실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2. 한의학과 석사과정 통합교과목 운영 및 책임교수
3. 한의학과 석사과정 선택과정 개설사항
4. 한의학과 학·석사통합과정 중 학사과정 개설 사항
5.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
6. 컴퓨터기반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
7. 문제바탕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
8. 임상실기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

9. 임상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
10. 특성화실습 및 선택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
11. 한의학연구과정 및 한의학연구지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12. 학생들의 국·내외 교류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

제5조(전문위원) ① 교육실은 영역별 전문위원을 두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의 담당 영역은 교육과정 평가, 문제바탕학습(PBL), 임상실기시험, 임상실습, 연구과정, **임상선택실습, 학생인턴실습** 등을 둔다.

1. 교육과정 평가 : 교육과정 제·개정 등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개발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.
2. 문제바탕학습(PBL) : PBL 과정 및 모듈 개발을 담당한다.
3. 임상실기시험: 임상실습종합평가 과정을 담당한다.
4. 임상실습 :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계획 및 지원을 담당한다.
5. 연구과정 : 한의학연구과정 관련 학생 배정 및 최종 논문과 보고서 등의 심사를 담당한다.
6. **임상선택실습 전문위원 : 임상선택실습의 계획 및 지원을 담당하며 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**
7. **학생인턴실습 전문위원 : 학생인턴실습의 계획 및 지원을 담당하며 한방병원 병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**

제6조(연구원 등) ① 교육실에는 전임연구원, 겸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.

1. 전임연구원은 교육실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박사과정 이상에 재학하거나 수료한 자를 실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.
2. 겸임연구원은 타 대학 전임강사(기금교수 포함) 이상의 교원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3. 연구보조원은 연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를 실장이 임명한다.

② 전임연구원, 겸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신분, 복무,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직원) 교육실의 행정 및 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재정) 삭제

제9조(회계) 삭제

제10조(운영세칙) 기타 교육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8. 6. 1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 3. 2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7. 11. 1.)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
국제화위원회 규정(제정 2011. 9. 1.)은 폐지된다.

부칙 (2022. 12. 2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3. 07. 0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3. 07. 0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3. 11. 0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